

의안번호	제3104호
의결 연월일	2026. . . (제 회)

의결사항	
------	--

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출자	고성군수
제출연월일	2026. 5. 4.

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3104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6. 5. 4.

제출자: 고성군수

1. 개정이유

- 가. 국정과제 및 지역현안 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 보강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.
- 나. 인력 재배치를 통한 효율·탄력적 행정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
 - 1) 총정원: 749명 → 761명 (증12명)
 - 가) 본 청: 365명 → 377명 (증12명)
 - 나) 의 회: 20명(변동없음)
 - 다) 직속기관: 142명(변동없음)
 - 라) 사업소: 28명(변동없음)
 - 마) 읍·면: 194명(변동없음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- 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

- 복지지원과(여성친화담당): 성별영향평가
 - 특이사항 없음[복지지원과-10448(2026. 3. 6.)호]

라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: 고성군 공고 제2026-451호
 - 가) 예고기간: 2026. 3. 3.~3. 23.(20일간)
 - 나) 예고결과: 의견 없음
- 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- 4) 신·구 조문 대비표: 붙임
- 5) 비용추계서: 붙임

4. 본문: 붙임과 같음

고성군 조례 제 호

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749명이며”를 “761명이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집행기관의 정원: 741명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■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[별표 3] <현행>

정원관리 기관별·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

기관별 직급별	총계	본청	의 회 사무과	직 속 기 관	사업소	읍·면
총 계	749	365	20	142	28	194
정무직 계	1	1				
군 수	1	1				
일반직 계	717	360	20	116	27	194
3급	1	1				
4급	4	3		1		
5급	44	19	3	6	2	14
6급 이하	662	337	17	103	25	180
전문경력관	6			6		
별정직 계	1	1				
6급상당 이하	1	1				
연구직 계	5	3		1	1	
연구관	0					
연구사	5	3		1	1	
지도직 계	25			25		
지도관	1			1		
지도사	24			24		

■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[별표 3] <개정 0000. 00. 00.>

정원관리 기관별·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

기관별 직급별	총계	본청	의 회 사무과	직 속 기 관	사업소	읍·면
총 계	761	377	20	142	28	194
정무직 계	1	1				
군 수	1	1				
일반직 계	729	372	20	116	27	194
3급	1	1				
4급	4	3		1		
5급	44	19	3	6	2	14
6급 이하	674	349	17	103	25	180
전문경력관	6			6		
별정직 계	1	1				
6급상당 이하	1	1				
연구직 계	5	3		1	1	
연구관						
연구사	5	3		1	1	
지도직 계	25			25		
지도관	1			1		
지도사	24			24		

신 · 구조문대비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2조(정원의 총수)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<u>749명</u>이며,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<u>집행기관의 정원 : 729명</u></p> <p>2. <u>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20명</u></p> <p>[별표 3]</p> <p>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</p>	<p>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 ----- <u>761명</u> -----이며-----.</p> <p>1. <u>집행기관의 정원 : 741명</u></p> <p>2. -----</p> <p>[별표 3]</p> <p>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기관별 직급별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총계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본청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의 회 사무과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직 속 기 관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사업소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읍·면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총 계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749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65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42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8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94</td></tr> <tr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정무직 계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 <tr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군 수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 <tr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일반직 계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717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60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16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7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94</td></tr> <tr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급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 <tr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4급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4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</td><td>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</td><td></td><td></td></tr> <tr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급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44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9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6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4</td></tr> <tr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6급 이하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662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37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7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03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5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80</td></tr> <tr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전문경력관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6</td><td></td><td>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6</td><td></td><td></td></tr> <tr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별정직 계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 <tr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6급상당 이하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 <tr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연구직 계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</td><td>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</td><td></td></tr> <tr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연구관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0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 <tr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연구사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</td><td>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</td><td></td></tr> <tr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지도직 계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5</td><td></td><td>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5</td><td></td><td></td></tr> <tr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지도관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</td><td></td><td>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</td><td></td><td></td></tr> <tr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지도사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4</td><td></td><td>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4</td><td></td><td></td></tr> </tbody> </table>	기관별 직급별	총계	본청	의 회 사무과	직 속 기 관	사업소	읍·면	총 계	749	365	20	142	28	194	정무직 계	1	1					군 수	1	1					일반직 계	717	360	20	116	27	194	3급	1	1					4급	4	3		1			5급	44	19	3	6	2	14	6급 이하	662	337	17	103	25	180	전문경력관	6			6			별정직 계	1	1					6급상당 이하	1	1					연구직 계	5	3		1	1		연구관	0						연구사	5	3		1	1		지도직 계	25			25			지도관	1			1			지도사	24			24		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기관별 직급별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총계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본청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의 회 사무과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직 속 기 관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사업소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읍·면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총 계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761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77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42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8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94</td></tr> <tr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정무직 계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 <tr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군 수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 <tr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일반직 계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729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72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16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7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94</td></tr> <tr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급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 <tr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4급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4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</td><td>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</td><td></td><td></td></tr> <tr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급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44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9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6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4</td></tr> <tr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6급 이하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674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49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7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03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5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80</td></tr> <tr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전문경력관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6</td><td></td><td>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6</td><td></td><td></td></tr> <tr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별정직 계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 <tr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6급상당 이하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 <tr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연구직 계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</td><td>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</td><td></td></tr> <tr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연구관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0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 <tr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연구사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</td><td>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</td><td></td></tr> <tr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지도직 계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5</td><td></td><td>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5</td><td></td><td></td></tr> <tr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지도관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</td><td></td><td>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</td><td></td><td></td></tr> <tr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지도사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4</td><td></td><td>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4</td><td></td><td></td></tr> </tbody> </table>	기관별 직급별	총계	본청	의 회 사무과	직 속 기 관	사업소	읍·면	총 계	761	377	20	142	28	194	정무직 계	1	1					군 수	1	1					일반직 계	729	372	20	116	27	194	3급	1	1					4급	4	3		1			5급	44	19	3	6	2	14	6급 이하	674	349	17	103	25	180	전문경력관	6			6			별정직 계	1	1					6급상당 이하	1	1					연구직 계	5	3		1	1		연구관	0						연구사	5	3		1	1		지도직 계	25			25			지도관	1			1			지도사	24			24		
기관별 직급별	총계	본청	의 회 사무과	직 속 기 관	사업소	읍·면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총 계	749	365	20	142	28	19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정무직 계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군 수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직 계	717	360	20	116	27	19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급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급	4	3	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급	44	19	3	6	2	1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급 이하	662	337	17	103	25	18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전문경력관	6			6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별정직 계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급상당 이하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구직 계	5	3	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구관	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구사	5	3	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지도직 계	25			2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지도관	1		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지도사	24			2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관별 직급별	총계	본청	의 회 사무과	직 속 기 관	사업소	읍·면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총 계	761	377	20	142	28	19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정무직 계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군 수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직 계	729	372	20	116	27	19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급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급	4	3	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급	44	19	3	6	2	1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급 이하	674	349	17	103	25	18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전문경력관	6			6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별정직 계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급상당 이하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구직 계	5	3	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구관	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구사	5	3	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지도직 계	25			2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지도관	1		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지도사	24			2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□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- 정원 12명 증원으로 정원의 총수 변경(안 제2조)
 - 국가정책 수요 및 지역 현안 수요 발생에 따른 정원 증원으로 인건비 추가 재정 소요 발생

2. 비용추계의 결과

가. 추계의 전제(5년간)

- 비용 추계는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제4조에 따라 공무원보수 규정 [별표 3] 의 2026년 공무원봉급표 및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을 기준으로 함.
 - 6급(12호봉) 4명, 7급(5호봉) 2명, 8급(3호봉) 5명, 9급(1호봉) 1명 추계

나. 추계 결과

- 연도별 현황 (단위: 천원)

구분 \ 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
		('26년)	('27년)	('28년)	('29년)	('30년)
세출	인건비	253,027	521,236	536,873	552,979	569,568
세입	교부세	253,027	521,236	536,873	552,979	569,568

※인상률(3%) 적용

- 2026년 253,027천원 예산 소요(반기분)
 - 6급(12호봉): (4명×56,532천원)÷2
 - 7급(5호봉): (2명×38,992천원)÷2
 - 8급(3호봉): (5명×33,953천원)÷2
 - 9급(1호봉): (1명×32,176천원)÷2

다. 재원조달방안

- 정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: 기준인건비 반영에 따른 보통교부세

작성자: 행정과장 이 기 동

참고

상위 및 관계법령(발췌)

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제24조(정원의 관리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채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채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08. 7. 3.>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·확인하여야 하고, 시·도지사는 그 조사·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, 기관별, 직급별,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.

1.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
2. 유사·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
3. 업무의 성질상 법인,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

④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)는 해당 시·도와 관할 시·군·구간 또는 관할 시·군·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 6. 29., 2024. 1. 16.>

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.

제29조(직급별 정원)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08. 7. 3.>

제30조(정원의 규정)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20. 3. 10.>

1. 집행기관의 정원(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)
2. 삭제 <2020. 3. 10.>
3.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
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
5.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

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[「지방전문경력관 규정」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(이하 “지방전문경력관”이라 한다)의 정원을 포함한다]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시·도의 5급 이하(시·군·구는 6급 이하)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 12. 4.>

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(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「지방전문경력관 규정」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)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 12. 4.>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 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12. 16.>

⑤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